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365호 2015. 8. 5. (수)

# [공 고]

□ 발행: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4,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5-572호

#### 정선 군관리계획(공원구역,조성계획)결정(변경)(안)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공원구역,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5년 7월 22일

#### 정 선 군 수

- 1. 공람목적 : 정선 어린이공원(16개소), 소공원(5개소), 수변공원(1개소) 공원구역 변경 및 조성계획수립 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 2. 정선 군관리계획(공원구역,조성계획)결정(변경)(안)
- 가. 군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안)

공 원 명	공원의 세분	위 치	공원면적(m²)
봉양1공원	어린이공원	정선읍 봉양리 244일원	1,750
봉양3공원	어린이공원	정선읍 봉양리 73-2일원	1,526
고한제1공원	어린이공원	고한읍 고한리 산113일원	1,607
고한제2공원	어린이공원	고한읍 고한리 산146일원	1,600
고한제3공원	어린이공원	고한읍 고한리 63-38일원	2,200
고한제4공원	어린이공원	고한읍 고한리 373-104일원	2,513→2,730 증)217
사북제1공원	어린이공원	사북읍 사북리 229-2일원	1,550
신동1공원	소공원	신동읍 예미리 692-25일원	890
신동2공원	어린이공원	신동읍 조동리 5번지 일원	1,500→1,427 감)73
신동 의림공원	어린이공원	신동읍 예미리 산190-3일원	5,900→8,308 증)2,408
신동4공원	어린이공원	신동읍 조동리 151-37일원	2,829
화암수변공원	수변공원	화암면 화암리 1114일원	4,936
증산공원	어린이공원	남면 무릉리 819일원	16,000→13,915 감)2,085
증산제3공원	어린이공원	남면 무릉리 431-11일원	2,768
증산제4공원	소공원	남면 무릉리 615-5일원	920
	봉양1공원 봉양3공원 고한제1공원 고한제2공원 고한제4공원 사북제1공원 신동1공원 신동1공원 신동2공원 신동 의림공원 신동4공원 화암수변공원 증산공원	봉양1공원 어린이공원 봉양3공원 어린이공원 고한제1공원 어린이공원 고한제2공원 어린이공원 고한제3공원 어린이공원 고한제4공원 어린이공원 사북제1공원 어린이공원 신동1공원 소공원 신동2공원 어린이공원 신동4공원 어린이공원 화암수변공원 수변공원 증산지3공원 어린이공원	봉양1공원어린이공원정선읍 봉양리 244일원봉양3공원어린이공원정선읍 봉양리 73-2일원고한제1공원어린이공원고한읍 고한리 산113일원고한제2공원어린이공원고한읍 고한리 산146일원고한제3공원어린이공원고한읍 고한리 63-38일원고한제4공원어린이공원고한읍 고한리 373-104일원사북제1공원어린이공원사북읍 사북리 229-2일원신동1공원소공원신동읍 예미리 692-25일원신동2공원어린이공원신동읍 조동리 5번지 일원신동 의림공원어린이공원신동읍 제미리 산190-3일원신동4공원어린이공원신동읍 조동리 151-37일원화암수변공원수변공원화암면 화암리 1114일원증산공원어린이공원남면 무릉리 819일원증산제3공원어린이공원남면 무릉리 431-11일원

### 제365호

### 정 선 군 보

2015. 8. 5.(수)

기정	남면제2호공원	소공원	남면 문곡리 66-7일원	286
기정	남면제3호공원	소공원	남면 문곡리 127-14일원	1,552
기정	남면제4호공원	소공원	남면 문곡리 319-4일원	887
기정	북평1공원	어린이공원	북평면 북평리 350일원	1,590
기정	북평2공원	어린이공원	북평면 북평리 702-1일원	2,040
기정	북평3공원	어린이공원	북평면 북평리 126일원	2,340
기정	북평4공원	어린이공원	북평면 북평리 산189-15일원	1,660

- 나. 공원조성계획(안) : 세부내용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 3.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장소 : 정선군 도시건축과, 각 읍·면사무소
- 4.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 5.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공람 기간내 정선군 도시건축과에 서면제출
-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도시건축과(☎ 560-214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5-575호

# 정선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반영여부 공개 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2015년 7월 22일

#### 정 선 군 수

- 1.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개요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나. 관리지역의 세부 용도지역 결정 : 보전산지 해제지역 등
- 다.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도로, 주차장, 광장, 녹지, 공원, 학교, 전기공급설비, 유수지 등
-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한·사북, 구절리, 화암취락지구, 사북직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 2. 공개내용
  - 정선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붙임 참조)
- 3. 공개기간 및 방법
- 가. 공개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 나. 공개방법 : 정선군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 (http://www.eiass.go.kr/)에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 033-560-213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1.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함
- 2.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개요
- 가. 계획수립자 : 정선군
- 나. 의견수렴 대상
- 지역주민, 관계 행정기관(워주지방환경청, 강원도 등)
-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공고일자 : 2015년 04월 24일(정선군 공고 제2015-321호)
  - ㅇ 공람공고
  -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 정보통신망: 정선군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
- 전략화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문

정선군 공고 제2015 - 321호

####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변경)(안)과 이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과「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주소, 성명, 전화번호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4일

정 선



- 가.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15. 4. 24. ~ 5. 8.)
- 다.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및 읍면사무소(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화암면)
- 라. 계획의 범위 : 정선 군관리계획 재정비(정선군 행정구역 전역)
- 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개요
- 용도지역 결정(변경) :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O 관리지역의 세부 용도지역 결정 : 보전산지 해제지역 등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 도로, 주차장, 광장, 녹지, 공원, 학교, 전기공급설비, 유수지 등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고한사북 지구단위계획, 구절리 지구단위계획, 화암취락지 구 지구단위계획, 사북직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 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조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 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 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변경)(안) 공고 및 공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 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자. 의견제출장소 및 방법 : 공람기간내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 서면 제출
- 차. 본 열람(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033-560-2132)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공고

<b>협의업무 담당</b>			
A SA ANNOCASION	Free Control C	4850.08450	Laborator
협의기관	원주지방환경청	담당자	전은혜
담당부서	환경평가과	E-mail	azalea21@korea.kr
전화번호	033-760-6413	Fax번호	033-765-0003
호안공람			
초안묘약서	[WJ20150091]A0정선 군관리계획	(재정비) 초안요약서-hwp.pdf	
초안 초아 공고일	[WJ20150091]A0(초안)0000- 표2 [WJ20150091]A0(초안)0001- 목2 [WJ20150091]A0(초안)0300- 개발 [WJ20150091]A0(초안)0300- 개발 [WJ20150091]A0(초안)0500- 전략 [WJ20150091]A0(초안)0500- 전략 [WJ20150091]A0(초안)0700- 전략 [WJ20150091]A0(초안)0700- 전략 [WJ20150091]A0(초안)1011-생 [WJ20150091]A0(초안)1014- 수략 [WJ20150091]A0(초안)1012- 지략 [WJ20150091]A0(초안)1013- 주택 [WJ20150091]A0(초안)1021- 환략 [WJ20150091]A0(초안)1021- 환략 [WJ20150091]A0(초안)1021- 환략 [WJ20150091]A0(초안)1021- 환략 [WJ20150091]A0(초안)1021- 환략 [WJ20150091]A0(초안)1021- 환략 [WJ20150091]A0(초안)1023- 자략 [WJ20150091]A0(초안)1030- 토론 [WJ20150091]A0(초안)1030- 토론 [WJ20150091]A0(초안)1030- 토론 [WJ20150091](초안)1200- 부록( [WJ20150091](초안)1200- 부록(	자(-)-hwp.pdf 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배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에 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147-16 격개황(163-193)-hwp.pdf 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_F(11 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 물다양성 서식지보전(243-279)- 발기본계획의 적정성(223-241)-ተ 환경의 보전(322-336)-hwp.pdf 명 및 생태축 보전(280-287)-hwp 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288- 경기준 부합성(다-소음진동)(362 경기준 부합성(다-소음진동)(362 경기준 부합성(다-소음진동)(362 경기준 부합성(다-대기질)(337-38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382-38 지이용(387-402)-hwp.pdf 관거(402-407)-hwp.pdf	대한 주민의견제출_F(219-222)-hwp.pdf 31)F-hwp.pdf 85-208)-hwp.pdf 용_F(209~217)-hwp.pdf -hwp.pdf nwp.pdf 321)-hwp.pdf ()-hwp.pdf ()-hwp.pdf ()-hwp.pdf ()-hwp.pdf ()-hwp.pdf ()-hwp.pdf ()-hwp.pdf ()-hwp.pdf
공람장소	정선군청 및 각읍면사무소	±C00-1C	2010/04/24 2010/05/05
설명회장소	생략		
설명회일시	0.00000	ol Hall & a La L	0015 04 04 0045 05 00
	생략	의견제출기간	2015, 04, 24 ~ 2015, 05, 08

■신문공고

 6
 2015년 4월 24월 필요월 제공조조로
 경제
 조현도원보
 전원도원보
 전원 보보
 조현보고 기업적으로
 오립니언
 2010년 4월 4월 요월 요금

#### 정선군 공고 제2015 - 321호

##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변경)(안)과 이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과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 분은 공략기간 내 의견서(주소, 성명, 전화번호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4일

#### 정 선 군 수

- 가.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시역 등) 결정(변경)(안) 및 전 략환경영항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15, 4, 24, ~ 5, 8.)
- 다. 공람장소 : 정선군정 도시건축과 및 읍·면사무소(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화암면)
- 라. 계획의 범위: 정선 군관리계획 재정비(정선군 행정구역 전역)
- 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개요
  - 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및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관리지역의 세부 용도지역 결정 : 보전산지 해제지역 등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도로, 주차장, 광장, 녹지, 공원, 학교, 전기공급설비, 유수지 등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고한사북 지구단위계획, 구절 리 지구단위계획, 회암취략지구 지구단위계획, 사북직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 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조서: 계재 생략(공립장수 비치) 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계재 생략(공립장소 비치)
- 아. 군관기계획(용도지역 등)결정(변경)(안) 공고 및 공람 일정에 다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같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 통지 는 하지 않습니다.
- 자. 의견제출장소 및 방법 : 공람기간니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 서면 제출
- 차. 본 열람(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디 지세한 내용은 정선군 도시 건축과 도시계획틱(033-560-2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5 - 321호

#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기서(초안) 공람 · 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변경)(안)과 이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과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하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주소, 성명, 전화번호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4일

#### 정 선 군 수

- 가. 공람목적: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항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 나.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15, 4, 24 ~ 5, 8)
- 다.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및 읍 · 면사무소(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남면, 여랑면, 북평면, 임계면, 화암면)
- 라. 계획의 범위: 정선 군관리계획 재정비(정선군 행정구역 전역)
- 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개요
- 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관리지역의 세부 용도지역 결정 : 보전산지 해제지역 등
- 군계회시설 결정(변경): 도로, 주차장, 광장, 녹지, 공원, 학교, 전기공급설비, 유수지 등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고한 사북 지구단위계획, 구절리 지구 단위계획, 화암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사북직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 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조서: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 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계재 생략(공람장소비치)
- 0+. 근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변경)(안) 공고 및 공람 일정이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자. 의견제출장소 및 방법 : 공람기간내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및 해당 읍 · 먼사무소 서먼 제출
- 차. 본 열람(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항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033-560-2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 3.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 ㅇ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음

정선군 정보통신망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제출된 주민의견 없음	제출된 주민의견 없음

4.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가. 강원도 지역도시과

구 분	평가서(초안)의견	조치결과	비고
	<ul> <li>도시계획 면적과 지적통계(행정구역) 면적 이 일치할 수 있는 방안 검토.</li> <li>(도시계획면적 1,220.67㎢ ≠ 행정구역 1,219.69㎢)</li> </ul>	인하여 발생하는 불일치로서,	
	<ul><li>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시설</li><li>중 현재까지 결정하지 아니한 시설은 금 회 재정비에 포함하여 결정토록 검토.</li></ul>		
	<ul> <li>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때에 재정비에 착수하는 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검토</li> <li>*「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참조</li> </ul>	토는 2015년까지 정선군의회보	
강원도 지역도시과	<ul> <li>국토교통부에서는 2011년 12월 15일 도 시·군계획(광역·기본·관리)수립지침을 개 정하여 재해취약성 분석을 도입하였고, 2012년 7월 1일부터 수립·변경되는 모든 도시·군계획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니 반드시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기 바람.</li> </ul>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검토 중에 있으며, 재해취약성 분석내용을	
	<ul><li>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중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와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간 용도지역 면적 합이 불일치하 므로 면적정정</li></ul>	면적재산정을 통하여 정정 면적	
개발할 필요가	<ul><li>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고밀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검토.</li></ul>	<ul><li>해당지역은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의 대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동읍 관광벨트화 사업"</li></ul>	
	위치면적 (㎡)용도지역적용조항기정변경조동리 151-1537,156제2종일반준주거 주거지역3-1-2-1 -(5)	의 일환으로서 에콜리안 하우스 설치계획 반영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수반되도록 조치할 것임	

구 분	평가서(초안)의견	조치결과	비고
	• 상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및 생활권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상업지역을 지정하여야 함으로 적정 면적 검토 및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변경될 수 있도록 검토.         위치       면적 (㎡)         고한리 106-3       26,165           기정 변경         일반상업지역 3-1-3-1	<ul> <li>대상지 일원은 2020년 정선 군기본계획상 상업용지로 기 반영된 부지이며, 고한·사북 지구단위계획의 고한리2-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지구단위계획이 기 수립된 지역으로 금회용도지역변경 추진에 따라 해당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병행하였음</li> </ul>	
강원도 지역도시과	○ 도시지역내 하천은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하고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위하여보전이 필요하므로 보존녹지 지정검토.         위치       면접(m)       용도지역       적용조항         기정 변경       지연녹지 기계역       3-1-1-10 3-1-5-2 기계역 자연녹지 가기계역 자연녹지 기계역 기계역 조주거지역	<ul> <li>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보전녹 지지역, 소하천은 자연녹지지역 으로 관리되어온 기정 군관리계 획을 고려하여, 금회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 차원에서 소하천에 지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할 것임</li> </ul>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6조에 의하면 어린이공원의 유치 거리는 250미터 이하이므로 어린이공원 2 개소 폐지에 따른 어린이공원 유치거리 검토 필요	○ 봉양 근린공원에 접해 있고 경사지 위치하는 등 어린이공원으로 부적절함으로 인하여 군의회의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2014.02.26)를 받은 제5호어린이공원과, 제7호 어린이공원과, 제7호 어린이공원의 일부 미사용 토지를 청소년문화센터로 활용하고 기조성공원시설은 소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2항및 제3항에서와 같이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어린이공원유치거리 기준이하에 해당하는경우로서, 폐지 및 변경가능.	

구 분	평가서	서(초안)의견		조치결과	비고
강원도 지역도시과	주·상·공업지역에	서 공원 및 녹지( 곱미터이므로 공원I	변적은 폐지에 항 관리 <sub>지점</sub>		
	감43,395)은 5	변경(77,275 →33 E시·군관리계획수립2 변경이 선행되어야 6	디침에	따른 대규모 법면발생 및 공원	

나. 강원도 환경과

구 분	평가서(초안)의견	조치결과	비고
	[총괄]      용도지역·지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상위·관련계획상의 정책내용 수용으로 지역특성에부합하고, 군의 성장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대응 하여 도시잠재력과 제약요인을 분석,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함과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별 투자 계획,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하는군관리계획(변경)으로써 각 부문별계획에대한 환경적 건정성 확보방안의 적성성,이행방안과 이행시점에 등의 적정성에 적절히 검토하여야할 것 임      도시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참고(2012.01.01. 환경부)  [항목별 검토의견]	한 가이드라인, 2012, 환경부" 등을 참고하여 환경적 건정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이행방안과 이행시점 등의 적정성 등을 검	
강원도 환경과	1. 자연환경의 보전     조사항목에 대하여 문헌조사외에 현장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야 함.(245쪽)     -동·식물 조사는 사업지구의 생태적 특성과 지리적 여건 등 생태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종조성이 풍부한 시기를 포함하여 현지조사하고, 종별 현지여건을 고려한 저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실시계획이 아닌 도시의 전체적 인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행정 계획으로 현 단계에서는 개별 사업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경관_288쪽) 주요 경관자원에 대한 보전 방안과 중장기적인 관리방안을 통해 지속 적으로 유지·관리 -산지, 구릉지, 스카이라인 조망원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충고 및 밀도 관리, 통경축 확보, 경관 조화 등 종합적 방안 마련	<ul><li>주요 경관자원에 대한 보전방안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유지 · 관리방안 등을 강구할 것임</li></ul>	

구 분	평가서(초안)의견	조치결과	비고
	- 조망경관자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통경축(시각회랑)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적정폭(30m이상 권고)확보방안 강구 - 기피 기반시설이나 경관불량시설은 외부에서 보이거나 접근 가능하지 않도록 충분한 폭과 높이의 완충녹지 및 공간확보	_	
	2. 생활환경의 안전성(337~386쪽)	진동, 토양, 폐기물 등)의 안전 성에 대한 정성 또는 정량적인 조사를 통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강원도 환경과	3.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저탄소 녹색성장) 군 관리계획 수립시 저에너지 사용을 기반으로 도시의 자연적환경 여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태양,풍력 등)의 이용이 최대화 될 수 있는 계획 모색  -에너지 등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발생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계획 수립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대한 저감 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노력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에 대	
	[관리계획에 따른 검토의견]  3. 용도지역 조정에 따른 환경성 제고 방안  (준주거지역) 주거와 상업의 혼합으로 인한 도시미관 및 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관녹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검토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장례식 장, 공장 등)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 하고, 주변에 충분한 완충녹지를 배치  -주거용도와 상업용도의 혼재로 인한 주거 환경보호를 위해 주거지역과 상역지역 사	대상지는 1개소(신동읍 조동리 151-15 일원)로 도시미관 및 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 정한 경관녹지를 배치할 수 있 도록 검토할 것임 -주거환경 침해 시설은 주거기능 과 분리 배치 검토	

구 분	평가서(초안)의견	조치결과	비고
	<ul><li>(일반상업지역) 주거지역과 분리시켜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녹지 등과 같은 완충</li><li>대를 설치하도록 검토</li></ul>		
	<ul><li>(자연녹지지역) 장래 난개발이 예상되는 곳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경 관지구, 보존지구, 미관지구 등 용도지구 로 지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li></ul>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한 계획은	
강원도 환경과	<ul> <li>4. 계획시설 재정비에 따른 환경성 제고 방안</li> <li>(도로) 간선도로변 소음과 대기분진 등을 고려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대기정화와 보진 흡착률이 높은 가로수종 식재 등다양한 계획안 마련</li> <li>-도로조성시 기존의 녹지, 하천 등을 단절하지 않는 계획을 수립하고 불가피한 경우,대안 마련</li> <li>-주거지역 내부에는 쾌적성과 안전성을 위해통과도로를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 함으도로의 쾌적함의 향상을 위하여 충분한 폭의가로녹지대를 조성 하고 휴게공간, 문화,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는 방안 강구</li> </ul>	선변경 등) 실시계획 수립시 소 음과 대기분진 등을 고려하여	

다. 강원도 수질보전과

구 분	평가서(초안)의견	조치결과	비고
	<ul> <li>저영향개발(LID) 기법</li> <li>-향후 단위개발 사업 시행시 도시지역의 비점오염원 관리 및 건전한 물순환 체계 확보를 위해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 ment) 기법을 적극 검토·활용하기 바람</li> <li>【관련 매뉴얼】</li> <li>화경영향평가시 저영향개발 기법 적용 메뉴얼</li> <li>*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주요 정책 → 제목검색</li> </ul>	<ul> <li>"환경영향평가시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 매뉴얼, 2013, 환경 부"를 참고하여 단위개발 사업 시행시 적용 가능한 저영향개 발(LID) 기법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것임</li> </ul>	
	<ul> <li>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오탁방지막, 침사지, 가배수로 등 토사유 출 저감대책을 철저하게 강구·시행하기 바라며,</li> <li>군 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현 단계에</li> </ul>	수 있는 가배수로 및 침사지, 오탁방지막 설치 등의 저감방 안을 수립·시행할 것임	
강원도 수질보전과	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으며, 향후 계획대 상지 개발시행시 상수공급, 하수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상수 공급, 하수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임	
	<ul> <li>오수처리계획</li> <li>-공사시 현장근무자에서 발생되는 분뇨 이외에 현장사무소, 숙소 등에서 오수가 발생될 경우 오수발생량 산정은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산정 방법(환경부고시 제2013-6, '13.1.18)」에 기준에 의거 산정하기 바라며,</li> <li>-오수 처리를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할 경우에는 관할기관인 정선군과협의하시기 바람</li> </ul>	획을 재정비하는 계획으로 대	

다. 원주지방환경청

구 분	평가서(초안)의견	조치계획	비고
	1. 총괄  □ 본 의견은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및 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정선 군관 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건의 전략환 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으로, 본안 평가서 작성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견을 반영하여 평가서를 작성	
	□ 상위 및 관련 계획·정책 등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의 환경적 건전 성이 확보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 재정비 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의 전문(全文)은 PDF 파일로 별도 제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였으며, 관련계	
원주지방 환경청 환경평가과 - 2639 (2015.05.28)	2. 세부 검토의견  □ 본 계획내용에 대한 적정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지역의 위치, 면적(당초/변경), 구역(당초/변경), 세부적인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개별 계획별 도면 및 설명자료를 작성·제시하여야함.  □ 도면은 자료의 판독이 가능한 축척 및해상도로 제시하되,계획부지의 위치 및주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크기,비율로 작성	자료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 평가서(본안)에 제시할 것임 -관련도면은 적정 해상도, 크기	
	□ 용도지역 변경  ◦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부합 여부, 대상지역과 주변의 환경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이 필요한 아래의 지역 등에 대해서는 현재의 용도지역을 유지하거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보전·생산관리지역 등)으로 지정하는 등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의 변경을 최소화하여야 함.  ─생태·자연도 1·2등급 권역을 포함하는 산림이 양호한 지역  ─토지적성평가 결과 우선보전지역 또는 1·2등급 지역	등의 상위계획과 주변의 환경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수립할 것임 -생태·자연도 1·2등급 권역은 최 대한 보전 -토지적성평가 결과, 우선보전지역	

구 분	평가서(초안)의견	조치결과	비고
원주지방 환경정 한 2639 (2015.05.28)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으로 변경 시 보전 용도의 용도지역 사이로 침투하는 형상 으로, 향후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이 편 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의 "중점검토 대상지역"등	중점검토 대상지역 등은 최대한	
	<ul> <li>1만㎡ 미만 소규모 Block의 경우 일괄적으로 인접한 계획관리지역 등으로의 편입은 지양하고, 계획부지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과 향후 개발가능성 등을고려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li> </ul>	우 계획부지 및 주변지역의 토 지이용현황과 향후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ul> <li>적법훼손지에 대하여 무조건 계획관리지 역으로 지정하기 보다는 주변 환경현황, 군기본계획 상의 개발방향과 그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제시하여야 함.</li> </ul>	군기본계획 상의 개발방향과 그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ul> <li>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구역(Block)별 아래의 설명자료를 추가 작성·제시하여야 함.</li> <li>-계획부지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li> <li>-계획부지 주변에 환경 관련 지역·지구·구역 등이 위치할 경우 이격거리 등 특이사항을 포함하여 도면에 표시</li> <li>-타 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적법훼손지에 대한 개발(예정) 현황</li> </ul>	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계획은 아래의 설명자료를 작 성·제시할 것임 -계획부지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주변 환경관련 지역·지구·구역	
	□ 군계획시설 재정비  ∘ (도로) 신설(선형개량, 노선연장 포함) 계  획의 경우 기존 도로망, 대상지역의 환경 현황 및 주변 정온시설(주거지역 내부 통과여부 등)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 대상지역의 환경 및 주변 정	
	<ul> <li>(공원) 정선군 도시기본계획 상의 공원· 녹지 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상위계 획과의 연계·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계획 을 수립·제시하여야 함.</li> </ul>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임	
	<ul> <li>(녹지) 완충녹지 구간 조정(축소) 시 인접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녹지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검토·제시하여야 함.</li> </ul>		

구 분	평가서(초안)의견	조치결과	비고
원주지방 환경청 환경평가과 - 2639 (2015.05.28)	3. 기타 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본 검토의견과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제시(각 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 구 분)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	강원도청 등) 및 주민 등의 의 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전략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제시할	
	<ul><li>본 의견보다 강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 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함께 대안 제시</li></ul>		
	<ul> <li>환경현황 조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증 빙자료(조사자 인적사항, 소속, 전공, 조 사 일시, 조사 방법, 조사 경로, 사진, 용역 여부 및 조사자 의견서 등)를 제시 하여야 함.</li> </ul>	경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	
	<ul> <li>다수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결정기관이 강원도 및 정선군으로 복합되어 있는 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평가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절차를 이행하거나,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 강원도와 정선군에서 함께 협의 요청하여야 함. 끝.</li> </ul>	대하여 별도로 전략환경영향평 가서(본안)를 작성하여 협의요	